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9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최유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이상욱,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9
명)

1. 제안이유

-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실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5조)
- 나.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다.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and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실 내 적절한 환기설비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마.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비·치료비 지원 및 휴게시설·휴게시간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바.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운영실태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급식실 시설
에 관한 안전지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4. “조리실”이란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

설 등을 갖추고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5. “급식종사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한 조리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급식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
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 및 조리실 환기시설의 개선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
4.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의 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 등을 준수하여 급식시설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리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건강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등의 지원)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u></p>
제1조 (생 략)	제1조 (원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원안과 같음)
4. “조리장”이란 급식시설 중 조리 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 시설 등을 갖추고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조리실”이란 ----- ----- -----.
5. (생 략)	5. (원안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3조 (원안과 같음)
제4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등의 지원)	<삭 제>
<p style="text-align: center;"><u>①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1. <u>조리장 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u>	
2. <u>조리장 내 실내 공기 질 측정장치 설치</u>	
3. <u>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을 위한 설비의 설치</u>	
4. <u>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u>	
5. <u>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u>	

의시설 확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한 조리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급식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

제5조 (생 략)

제6조(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등 지원)

-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원안 제5조와 같음)

<삭 제>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
 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 및 조리실 환기시설의 개선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
 4.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의 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 등을 준수하여 급식시설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리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건강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예산 등의 지원)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	○ 중기 학교급식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기 추진 단,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는 차이가 있음
2	제7조 (실태조사)	△	○ 현재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실태조사를 일부 조사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실태조사시 비용 발생이 예상됨 다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
3	제6조, 제8조 ~제13조	×	○ 기 추진1), 「제3차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2023~2026)」 학교급식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사업별·연차별 추진중에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7조(실태조사)는 현재 담당공무원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조례안의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서울시 실태조사 비용2)을 추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함

1) 서울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기추진 사업

○ 안 제6조(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 서울시교육청 「제3차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2023~2026)」을 살펴보면, 현재 학교급식 전담인력의 적정 운영을 위해 현재 영양(교)사 및 조리사는 급식학교당 1명씩 배치(영양교사:공립 3식 급식교 영양교사 2명 배치(6교))하고, 조리실무사의 경우 급식 인원수에 맞는 배치인원 수에 대한 기준 마련
- 학교급식 종사자 대체인력풀 운영
 - '대체인력풀' 운영 : 유급휴가 등 휴가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방안 강구
 - 유급휴가 등 사용이 필요하나 대체할 인원이 없어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확보
 - 학교에서 자체 확보하고 있는 대체인력을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력풀' 등에

○ 안 제8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제9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10조(소방시설 설치)

- (급식시설개선) 지하 급식실 이전 및 노후 급식실 개선(42,496,866천원) ⇒ 추경 7,742,247천원 추가편성
- (급식실 및 학생 식당 신증축)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추진계획에 따른 시설비 편성(16,850,213천원) ⇒ 추경 6,119,772천원 추가편성
-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노후 조리기구 교체(20,740,515천원) ⇒ 추경 104,663천원 추가편성
- (신규학교조리기구 구입) 신규 학교조리 가구 구입 (5,557,996천원) ⇒ 추경 1,070,633천원 추가편성
- (급식로봇 및 식기류렌탈세척운영 도입) 학교급식 운영난 해소 도입(380,000천원) ⇒ 추경 5,000,000천원 편성
 - ▶ 급식로봇 도입(3,000,000천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 참여 및 자체 도입 추진 → '24년 하반기 공모(4교), 자체(10교)
 - ▶ 식기류렌탈세척운영(2,000,000천원) : 외부 세척전문 업체에 식기류(식판, 수저세트) 렌탈 세척 업무 위탁 → '24년 상반기 19교 지원, 하반기 (100교) 지원 예정, '23년 사업 참여학교 64교

○ 안 제11조(건강관리 지원), 제12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제13조(교육·연수)은 기추진

- 급식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22년 이후 채용인원 및 이상소견자 검진비 지원)을 기추진
- 조리실 냉·난방시설 및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등 환경개선 추진, 학교 자체 예산 활용, 적극적으로 관련 시설개선 기추진
-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및 연수 :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기관별 교육·연수 기시행

2) 추정금액(40,000천원)은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실태조사 비용을 준용하여 참고자료만 제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